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[별지 제17호서식]

자동간이 환급 [ ]업체·[ ]품목 [ ]지정·[ ]변경·[ ]취소 신청(통보)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일자	처리기간 **7일**

신청인	업체명	대표자	통관고유부호
	주소		사업자등록번호
	제조장소재지		e-mail주소
	전화번호	휴대전화	사서함부호
	자본금		종업원수

수출물품별 환급실적

품목번호 (HSK10단위)	품명	환급실적(₩)		품목번호 (HSK10단위)	품명	환급실적(₩)	
		전연도	전전연도			전연도	전전연도

환급금 지급시기

[ ]수출즉시	[ ]월	[ ]분기

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35조(변경·취소의 경우에는 제38조)에 따라 자동간이 환급[ ]업체·[ ]품목의 [ ]지정·[ ]변경·[ ]취소을(를)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세 관 장 귀하

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35조(변경·취소의 경우에는 제38조)에 따라 자동간이 환급[ ]업체·[ ]품목(으)로 [ ]지정·[ ]변경·[ ]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20 년 월 일

○ ○ 세 관 장 직인

귀하

첨부서류	수수료
1. 신청서 2부 2. 공장등록증명서(최근 3개월 이내인 것) 또는 임가공계약서 등 사본 1부 3. 품목번호(HSK10단위)별 수출물품 설명서 1부 4.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 증빙서류 1부	없음

※ **유의사항** : 고시 제37조에서 정한 제조자 이전 등 업체변경사항에 대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